

대구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20나30500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20나305001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10. 5 선고 2021재가단11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2.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2.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론종결 2020. 7. 15.

판결선고 2020. 9. 16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단514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. 3. 22. 접수 제17039, 17040, 17041, 17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인섭, 판사 최미복, 판사 이준규

별지